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연사 01117-56	전화: 731-622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0.1		
보조 기관	부서장 전결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총 계
	내무국장 no		
	연사과장 no		반 초 인
기안책임자	국윤호 국윤호		
경유 수신 참조	과 안 참 조	시 장	
제 목	'90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시행 계획		
(제 1 안) 내 부 결 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상반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첨 공고			
(안)과 같이 공고함과 아울러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안) : 별 첨			
나. 공 고 일 : '90.1.30여전			
다. 공고기간 : '90.2.1 - 90.2.20.			
라. 신청기간 : '90.3.1 -90.3.5			
마. 명예퇴직예정일 : '90.3.31.			

1505-25(2-1)일(1)갑

85. 9. 9. 승인 "내가아건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o-1

190mm×266mm 인쇄용지 2급 80g/㎡

가 40-41 1989. 9. 8.

196

'90 상반기 명예퇴직 시행계획

대 상

- 2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 20년 이상 재직하고
-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자.
 - 5급이상 (30.1.1-38.12.31 출생자)
 - 6급이하 (33.1.1-41.12.31 출생자)

* 위 조건 구비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

명예퇴직수당

- 1년이상 5년 이내
퇴직시 월봉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 이내
퇴직시 월봉급액의 반액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90.3.31 기준 17) 일간이다

일정별계획

- 시보공고 : 90.2.1. - 2.20 (20일간)
- 신청접수 : 90.3.1. - 3. 5 (5일간)
- 명예퇴직예정일 : 90.3.31 자
3월말 130일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196-1

청부 : '90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1부. 끝.
(제 2 안)
경재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동 권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상반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공고할것이니 업무에 참고하고,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할수 있도록 조치할것.
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중,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작전 퇴직하는자.
• 5급이상(30.1.1-38.12.31사이 출생자)
• 6급이하(33.1.1-41.12.31 ")
나. 신청기간 : 90.3.1 - 90.3.5.
다. 명예퇴직예정일 : 90.3.31.
라. 명예퇴직신청자 제출서류
(1)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1부
(2) 연금카드 사본 1부



(3) 공직포서 3부 (1부는 공직포서의 조사자 추천관련에 해당	
자가 날인 서명하고, 2부는 여백으로 제출)	
2. 지방공무원은 본 계획에 따라 소방본부 자체에서 별도로 신청.	
접수, 심사, 특별승진, 명예퇴직 결정등 관계규정에 따른 일련의 적정 조치를 취	
하고 그 결과를 '90.4. 10까지 인사과장 참조 보고하기 바람.	
첨 부 : 공고(안) 1부. 끝.	
수신처 : 서과 1-71, 서사 1-43, 서구 1-22, 서본부(1-3)	
(제 3 안)	
수 신 : 공 보 관	발신 : 인사과장
제 목 : 시보 공고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도 상반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	
고하고자 하오니 시보 게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 '90.1.30여전 게재	
첨 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안 1부. 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1990. 1. 16 부시장 </div>	
198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 호

공고번호	1990.1.17	제 16 호
담당자	법제국장	법무담당관
		

1990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18 .

서울특별시장

1. 명예퇴직대상

2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신청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 5급이상 (30.1.1 - 38.12.31 사이 출생자)

' 6급이하 (33.1.1 - 41.12.31 사이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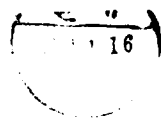
2. 명예퇴직신청

가. 신청기간 : '90.3.1 - 90.3.5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할것.

3. 명예퇴직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명예퇴직대상자의 사직원제출

명예퇴직의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명예퇴직자 우대

· 수당지급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가. 1년이상 5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 월수

나. 5년초과 10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 60월

2

· 특별승진및 표창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4호

(단, 승진임용제한을 받는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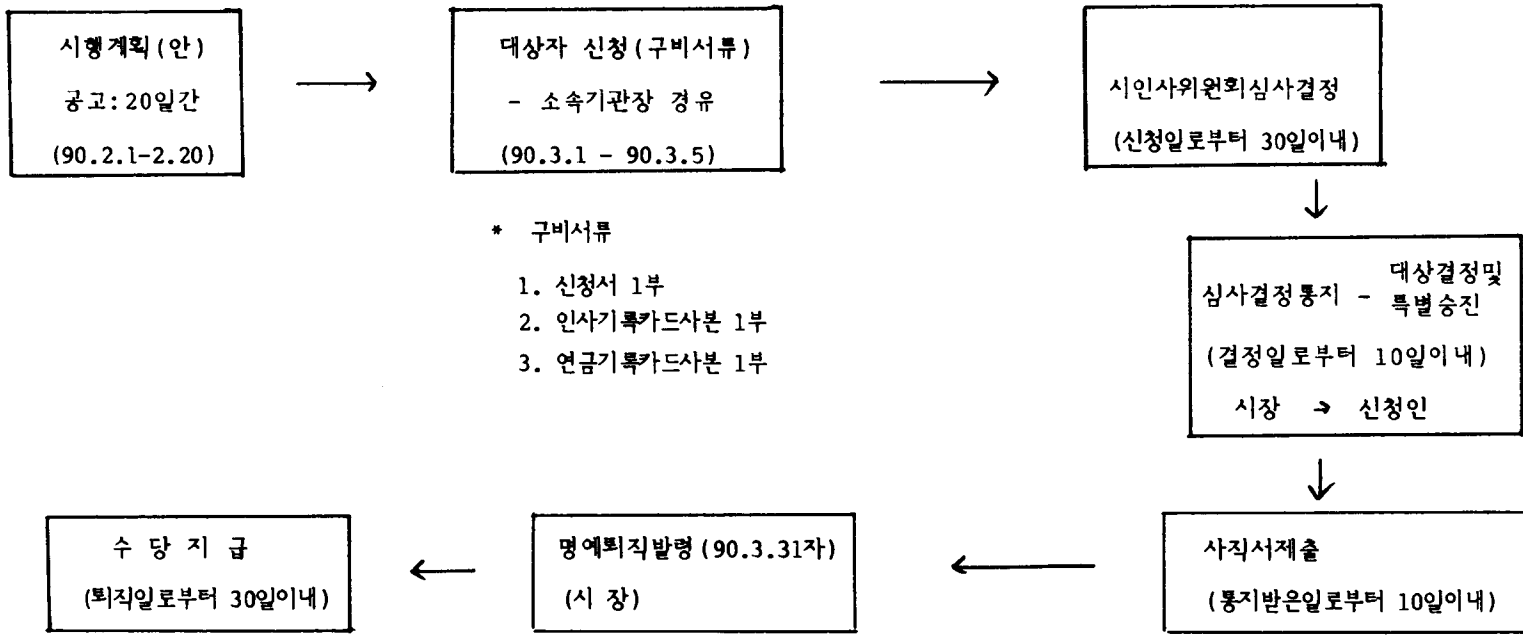
6. 본인의 의사에 관한 신청의 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1990. 1. 16
부시장

명 예 퇴 직 절 차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공무원중 2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2.9.27대령 1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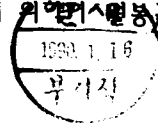
제 3 조 (지급대상) 1.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수 있다.

3. 삭 제 (82.9.27대령 10924)

4.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82.9.27대령 10924)

제 4 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꺾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교육기관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안기 수당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 5 조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 7 조 (특적의 심사 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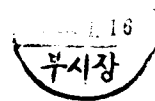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공무원
2. 상위직공무원

제 8 조 (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2.9.27대령 10924)



제 10 조 (시행규칙) 근속년수의 계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관서소속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82.9.27대령 10924)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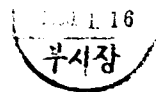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82.9.27 대령 1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10.11 대령 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 1년이상5년이내	퇴직당시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 이하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10년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left[\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text{월}}{2} \right]$

- (비고) :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하되 정년잔여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 정년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지급액은 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991. 1. 16
부시장